

평창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

(전수일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62
----------	-----

발의연월일: 2019년 8월 16일

발 의 자: 전수일 의원 외 2명

1. 제안이유

- 평창군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군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평창군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등 (안 제1조 ~ 제2조)
- 나. 토론회 등의 운영원칙 (안 제3조)
- 다. 토론회 등의 개최 (안 제4조)
 - 연간 세 차례 이내의 토론회 등 개최
 - 의원 2명 이상이 지정토론자로 참여
- 라. 계획 수립 및 관리 (안 제5조)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사항 포함한 연간계획 수립
 - 회의록 작성 관리
- 마. 토론회 등의 결과 반영 (안 제7조)
 - 제시된 의견은 안건상정, 조례 입법 등 의정활동에 반영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다. 입법예고 :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라 예고제외

평창군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론회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등 각종 의견청취를 위한 행위를 말하며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제62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군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군민의 의견이 의정활동과 조례 및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서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건설적인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개최) ① 의장은 연간 세 차례 이내의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토론회 등에 대한 일시, 장소, 안건, 의견제출 및 참가방법 등은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③ 토론회 등에는 의원 중 2명 이상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하여야 하며, 한번 참여한 의원은 다음 토론회 등에 연속하여 참여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계획수립 및 관리) ① 의장은 토론회 등에 대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토론회 등의 주제
2. 일시 및 장소
3.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4. 주요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등

제6조(진행) ①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결과의 반영 등)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항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거나 조례의 입법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의장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공무원을 제외한 토론회 등의 발제자, 토론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률]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안 제4조(개최) ① 의장은 연간 세 차례 이내의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임.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의회 전수일 의원
연락처	(033) 330 -2506